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69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9년 5월 24일
- 회 부 일 : 2019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일반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여 적기에 현장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일반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규정함(안 제3조 및 별표 1).
- 나.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2019. 3. 14. ~ 4. 3.) 결과

입법예고결과 요약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김 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12월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군이 기술직으로 통합되어 현장 업무도 기존 일반직(공업직렬)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업무를 수행할 직류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기능직군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 제정에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13년 직종 개편 이후 관리운영직 감소로 인해 도로·물재생·상수도 등 현장 전담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 공업직의 경우 현장근무 기피 및 순환 보직에 따른 잦은 전보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전기 등 세 직류를 신설하여 임용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 및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현장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새로운 기능직군 신설은 아님.

5. 검토의견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용령에서 정한 직류외에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19.6.18)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시설관리 직렬 내에 세부직류(일반시설·기계시설·전기시설)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제46조 (시험과목) ⑫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직군·직렬·직류의 개념

-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함(지방공무원법 제5조제7호),
-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하며(지방공무원법 제5조제8호), 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 모든 임용행위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됨.
- 직류 :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하며(지방공무원법 제5조제9호), 직무의 성질에 따라 직렬을 보다 세분화한 개념이며, 임용자격, 시험 기타 인사행정이나 직위분류의 기초가 됨.

-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직류 신설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인사 분야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임용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현재 관리운영직군의 기계 및 전기 전담인력 퇴직 후 효율적인 인력 확보 및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보임.
 - ※ 서울시(행정국)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완하여 인사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꾀하고, 필요 인력을 확충하는데 부합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다만, 동 제정안의 입법형식과 구성체계가 적정한지 여부와 공무원 직류 전반에 승진, 전보 등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롭게 신설되는 직류(일반시설·기계시설·전기시설)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직류운영, 시험과목 등으로 조문을 구성하고 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정의)	- 사용용어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름.
제3조(직류운영)	- 「지방공무원 임용령」규정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직류표를 별표 1에 규정
제4조(시험과목)	-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을 별표 2에 규정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1) 정 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따르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법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조례)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를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2) 직류운영 규정 신설(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선발 및 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 직군	시설 관리	일반시설						지방 시설관리 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기계시설										
		전기시설										

- ※ 지방분권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은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가는 집행기능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이상의 공직경쟁력과 전문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복잡성, 다원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인력관리와 합리적인 공직분류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본 제정안에서 시설관리직렬내 기계·전기 등 세직류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2013년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은 명확한 직무구분이나 특별한 자격이 없어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기계조작 및 현장 업무에 노하우가 축적된 관리운영직군의 기계·전기운영직의 자연감소가 심화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임.

[시설관리직·관리운영직(기계·전기운영) 퇴직예정 현황]

○ 향후 5년간 퇴직예정 인원 : 371명(해당직렬 정원의 47.1%)

구분	'19.7. 정현원			연도별 퇴직예정 인원														
	정	현	차	소계	19.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상	하	합계	상	하	합계	상	하	합계	상	하	
합계	787	707	△80	371	33	90	40	50	84	43	41	102	54	48	62	36	26	
관리 운영직군	소계	599	556	△43	264	24	63	27	36	60	30	30	78	43	35	39	21	18
	전기운영	216	212	△4	90	5	23	7	16	19	11	8	29	17	12	14	6	8
	기계운영	383	344	△39	174	19	40	20	20	41	19	22	49	26	23	25	15	10
기술직군	시설관리	188	151	△37	107	9	27	13	14	24	13	11	24	11	13	23	15	8

○ 다만, 새 직류의 신설에 따라 기존시설관리직렬의 통합 및 구분가능성 여부와 그에 따른 승진기간 및 소요년수 등 인사적체와 불이익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새직류(기계관리·시설관리)에 따라, 기존 시설관리직에서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참고하여 직류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새직류 선발인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당초(입법예고 시)	변경(법제처)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 -----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 -----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 또한, 임용령이 변경된 별표 1(참고자료 ①)에 따른 직류이외의 직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요건이 제한주의로 변경되었고,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 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안 수정의견]

제정안										수정의견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u>달리</u>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u>신설</u> 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관련)										〔별표1〕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 직군	시설 관리	일반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지방 시설관리 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기술 직군	시설 관리	<u>일반시설</u> 기계시설 전기시설					지방 시설관리 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 동 제정안은 조례안 제출('19.5.24)당시 상위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임용령 개정 절차 진행중 직류 신설요건이 변경(제한주의)되었는 바, 잘못된 조례안의 경우 철회하고 새롭게 제출했어야 할 것이며, 행정국은 조례 제출시 중앙정부의 입법절차 진행여부 등을 확인 후 추진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input type="checkbox"/>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9.5.24. - 차관회의 : '19.6.7 - 법제처 심사 : '19.6.7 - 국무회의 : '19.6.11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19.6.18.

- 한편, 행정국은 복잡성, 다원성, 가변성 및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인력 관리와 합리적인 공직분류 체계가 부응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 직류 신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과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기술직 직렬별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년수]

- 직렬별 평균 승진소요년수(자치구 포함)

※ 강임 후 승진자 제외, 근속, 특별승진 제외, '17.1.1 ~ '19.7.31 승진

직군	직렬	합계	2→1급	3→2급	4→3급	5→4급	6→5급	7→6급	8→7급	9→8급
기술	계	4,598	01-05-03	03-00-17	08-03-08	07-07-27	10-01-17	08-11-29	04-00-17	02-02-26
	기계	266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0-00-12	09-07-17	04-01-11	02-03-15
	전기	366	00-00-00	00-00-00	00-00-00	05-04-26	10-11-24	07-05-01	03-04-03	02-02-29
	화공	133	00-00-00	00-00-00	00-00-00	08-08-07	12-00-21	10-00-26	04-00-14	02-00-03
	농업	12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5-05-22	03-09-11	03-00-10	03-01-13
	녹지	302	00-00-00	00-00-00	09-04-08	10-07-00	10-01-11	08-07-28	04-07-27	02-04-11
	축산	1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9-05-18	06-10-21	02-07-16	03-01-10
	수의	11	00-00-00	00-00-00	00-00-00	04-09-04	16-00-04	10-03-12	00-00-00	00-00-00
	의무	2	00-00-00	00-00-00	00-00-00	08-02-08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약무	20	00-00-00	00-00-00	00-00-00	09-11-07	19-00-25	10-03-23	00-00-00	00-00-00
	보건	203	00-00-00	00-00-00	00-00-00	06-10-21	10-06-14	09-09-22	05-06-23	02-02-20
	식품위생	2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0-02-02	00-00-00	00-00-00
	간호	275	00-00-00	00-00-00	00-00-00	04-04-15	09-03-14	10-00-07	04-06-13	00-00-00
	임상병리	5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4-03-13	09-05-25	05-05-08	02-11-08
	방사선	37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8-08-00	10-05-13	04-03-28	01-11-25
	물리치료	1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8-11-14	09-08-28	04-01-18	04-05-22
	치과위생	4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6-04-10	07-03-14	00-00-00
	환경	87	00-00-00	00-00-00	09-09-11	14-09-04	11-07-01	08-11-28	04-00-00	02-08-19
	선박항해	6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8-02-21	00-00-00	02-04-28
	토목	1,070	01-00-24	03-00-17	07-02-13	07-09-17	08-02-29	09-10-12	03-07-07	02-00-16
	건축	531	02-01-17	00-00-00	10-02-06	07-04-12	10-08-29	09-02-13	02-09-20	02-01-25
	지적	169	00-00-00	00-00-00	00-00-00	07-00-17	12-01-19	10-08-29	04-07-10	02-07-27
	디자인	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2-06-03	00-00-00	00-00-00
방재안전	25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8-05-13	05-11-29	00-00-00	01-11-22	
방송통신	112	00-00-00	00-00-00	00-00-00	10-00-21	15-01-17	09-01-19	05-08-12	02-08-04	
위생	9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7-06-27	00-00-00	00-00-00	
사역	3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5-09-17	00-00-00	00-00-00	
간호조무	2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8-04-13	00-00-00	00-00-00	
시설관리	206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6-09-12	05-05-07	02-01-11	
운전	673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1-04-22	07-03-14	03-09-15	02-03-22	

[최근 3년간('17.1.1 ~ '19.7.31) 직렬별 퇴직자 현황]

(단위 : 명)

직군	직렬	2017년	2018년	2019.7월 기준
합계		747	819	379
행정직군 소계		164	184	95
행정직군	행정	144	159	84
행정직군	세무	0	2	0
행정직군	사회복지	0	2	2
행정직군	전산	3	1	0
행정직군	감사	2	2	1
행정직군	사서	2	2	0
행정직군	고위공무원	1	1	1
행정직군	속기	0	0	0
행정직군	방호	12	15	7
기술직군 소계		211	231	124
기술직군	기계	15	30	14
기술직군	전기	31	24	15
기술직군	화공	7	12	3
기술직군	농업	1	1	0
기술직군	녹지	6	11	4
기술직군	축산	1	0	0
기술직군	수의	1	4	0
기술직군	의무	0	0	0
기술직군	약무	1	3	0
기술직군	보건	1	2	2
기술직군	식품위생	0	0	0
기술직군	간호	10	8	7
기술직군	임상병리	4	1	0
기술직군	방사선	1	0	0
기술직군	물리치료	0	2	2
기술직군	치과위생	1	0	0
기술직군	환경	8	6	2
기술직군	선박항해	1	0	0
기술직군	토목	46	47	29
기술직군	건축	10	11	4
기술직군	지적	4	3	1
기술직군	방재안전	0	0	1
기술직군	방송통신	5	5	4
기술직군	위생	9	15	8
기술직군	간호조무	0	2	0
기술직군	시설관리	33	23	17
기술직군	운전	15	21	11

3) 시험과목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

- 안 제4조는 제3조에서 시설관리직의 직류신설에 따른 시험과목을 별표(2)에 정하려는 것으로, 현장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안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다만, 행정국은 시설관리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과목을 정하려는 바, 전문성 제고 평가에 해당 과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동 제정안은 제3조와 연계된 조문으로써, 직류조정에 따라 임용 시험과목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행정국 수정의견							
[별표2] 시설관리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제4조 관련)						[별표2] 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제4조 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관리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관리		
			직류	일반사실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	일반사실	기계시설	전기시설
6급 및 7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 한자, 사회	국어, 한자, 사회	국어, 한자, 사회	6급 및 7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 한자, 사회	국어, 한자, 사회	국어, 한자, 사회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8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사회	물리	물리	8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사회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자론, 전자기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자론, 전자기
6급 및 7급	경력경쟁 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국어, 한자, 사회	국어, 한자, 사회	국어, 한자, 사회	6급 및 7급	경력경쟁 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국어, 한자, 사회	국어, 한자, 사회	국어, 한자, 사회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자론, 전자기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자론, 전자기
8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 한자, 사회	국어, 한자, 사회	국어, 한자, 사회	8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 한자, 사회	국어, 한자, 사회	국어, 한자, 사회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기계일반	전기이론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기계일반	전기이론
6급 및 7급	경력경쟁 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6급 및 7급	경력경쟁 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제2차	필수	사회	기계일반	전기이론			제2차	필수	사회	기계일반	전기이론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개정 2016. 6. 28.>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 군	직 렌	직 류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 정	일반행정	지 방 관리관	지 방 이사관	지 방 부이사관	지 방 서기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노 동									
		문화홍보									
		감 사									
		통 계									
		기업행정 운 수									
	세 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 산	전 산					지방전산 주사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기	지방전산 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 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 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 사무관	지방 사회복지 주사	지방 사회복지 주사보	지방 사회복지 서기	지방 사회복지 서기보
	사 서	사 서					지방사서 사무관	지방사서 주사	지방사서 주사보	지방사서 서기	지방사서 서기보
	속 기	속 기					지방속기 사무관	지방속기 주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기	지방속기 서기보
	방 호	방 호					지방방호 사무관	지방방호 주사	지방방호 주사보	지방방호 서기	지방방호 서기보
경 비											
2. 기술	공 업	일반기계	지 방 관리관	지 방 이사관	지 방 부이사관	지 방 기 술 서기관	지방공업 사무관	지방공업 주사	지방공업 주사보	지방공업 서기	지방공업 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 선									
		일반전기									
		전 자									
		원자력									
		금 속									
		야 금									
		섬 유									
		일반화학									

		가 스
		자 원
농 업		일반농업
		잠 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 산
		생명유전
	녹 지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 경
수 의		수 의
해양 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 건		보 건
		방 역
식품위생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약 무		약 무
		약 제
간 호		간 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환 경		일반환경
		수 질
		대 기
		폐기물
항 공		일반항공

지방농업 사무관	지방농업 주사	지방농업 주사보	지방농업 서기	지방농업 서기보
지방녹지 사무관	지방녹지 주사	지방녹지 주사보	지방녹지 서기	지방녹지 서기보
지방수의 사무관	지방수의 주사	지방수의 주사보		
지방 해양수산 사무관	지방 해양수산 주사	지방 해양수산 주사보	지방 해양수산 서기	지방 해양수산 서기보
지방보건 사무관	지방보건 주사	지방보건 주사보	지방보건 서기	지방보건 서기보
지방 식품위생 사무관	지방 식품위생 주사	지방 식품위생 주사보	지방 식품위생 서기	지방 식품위생 서기보
지방 의료기술 사무관	지방 의료기술 주사	지방 의료기술 주사보	지방 의료기술 서기	지방 의료기술 서기보
지방의무 사무관				
지방약무 사무관	지방약무 주사	지방약무 주사보		
지방간호 사무관	지방간호 주사	지방간호 주사보	지방간호 서기	
지방 보건진료 사무관	지방 보건진료 주사	지방 보건진료 주사보	지방 보건진료 서기	
지방환경 사무관	지방환경 주사	지방환경 주사보	지방환경 서기	지방환경 서기보
지방항공	지방항공	지방항공	지방항공	지방항공

		조 종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지방시설 사무관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서기	지방시설 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 축								
		지 적								
		축 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지방 방재안전 사무관	지방 방재안전 주사	지방 방재안전 주사보	지방 방재안전 서기	지방 방재안전 서기보
	방송통신	통신사				지방방송 통신 사무관	지방방송 통신주사	지방방송 통신주사보	지방방송 통신서기	지방방송 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 생	위 생				지방위생 사무관	지방위생 주사	지방위생 주사보	지방위생 서기	지방위생 서기보
		사 역								
	조 리	조 리				지방조리 사무관	지방조리 주사	지방조리 주사보	지방조리 서기	지방조리 서기보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 간호조무 사무관	지방 간호조무 주사	지방 간호조무 주사보	지방 간호조무 서기	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시설관리	시설관리				지방 시설관리 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운 전	운 전				지방운전 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3. 관리 운영	토 목 운 영	토 목 운 영					지방토목 운영주사	지방토목 운영주사보	지방토목 운영서기	지방토목 운영서기보
	건 축 운 영	건축운영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보
		배관운영								
	통 신 운 영	통 신 운 영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보	
	전화상담 운 영	전화상담 운 영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보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보	
	전 기 운 영	전 기 운 영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보	
	기 계 운 영	기계운영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보
		영사운영								
	열 관리 운 영	열 관리 운 영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보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보	
	화 공 운 영	화 공 운 영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보	
	가 스 운 영	가 스 운 영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보	
	기후환경 운 영	기후환경 운 영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보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보	

